

임예진 관세법(2026년 대비) 개정사항 (2)

- 관세법 시행령 2026. 2. 27. 개정 [시행 2026. 2. 27.]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6. 2. 27. 개정 [시행 2026. 2. 27.]

p.63 : 영 제18조 ④ 수정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p.149 : 영 제61조 제3항 수정

제3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및 내용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항에 따른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20일의 범위 내에서	1개월의 범위내에서

p.168 : 영 제70조 제4항 신설 (기존의 제4항부터 제13항은 제5항부터 제14항으로 변경)

제4항 재심사 필요여부 결정기간 연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 ② 영 제59조 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p.227 : 영 제95조 제1항 수정

제1항 대상국가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지역	국가
아시아	부탄
중동	이란 · 이라크 · 레바논 · 시리아
대양주	나우루
아프리카	코모로 ·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유럽	안도라 · 모나코 · 산마리노 · 바티칸 ·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코모로 ·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p.275 : 영 제113조 제2항 수정

제2항 지정기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
3년의 범위 내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해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p.342 : 영 제141조의5 제1항 ① 수정

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납부비율 = $\frac{B+C}{A+B}$

- A: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체납액
- B: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대상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법 제116조의2 제4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개정 전	개정 후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체납액 납부비율
계산식 개정	

p.407, 408 : 영 제158조의2 제3항 ㉠, ㉡, ㉢ ㉣ 1) 수정

- ②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
- ③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 ㉡ 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
 - 1) 마약류 등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

개정 전	개정 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1) 마약류 등

p.488, 489 : 영 제204조 제목, 제1항, 제4항 수정

영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제1항 혼용승인 신청서 기재사항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혼용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 ②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 기간 및 사유

제4항 혼용승인 과세표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제 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제출하여야	제출해야
① 혼용할	① 혼용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에서

p.497 : 영 제213조 제3항 신설

제3항 판매물품의 회수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 제1항 ①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 제1항 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p.546 : 영 제226조 제1항 수정

제1항 보세운송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⑦, ⑨ 및 ⑩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 ② 운송통로와 목적지
- ③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④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⑤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⑥ 운송기간
- ⑦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 ⑧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상호·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⑨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 ⑩ 보세운송 사유
- ⑪ 영 제189조 ③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전	개정 후
다음의 사항을	다음의 사항(⑦, ⑨ 및 ⑩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①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①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③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③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⑤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⑤ 품명·규격·중량 및 가격
	⑧, ⑨, ⑩, ⑪ 신설

p.585, 586 박스 : 영 제239조 제2항 수정

제2항. 통보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 ㉠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
 - ㉡ 물품발송인
 - ㉢ 물품수신인
- ② 통관보류 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 ③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화주에게 통보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우편물의 화주

p.585 박스 : 영 제240조 제1항 수정

제1항. 소명자료 제출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우편물의 화주가

p.588 : 영 제242조 제2항 수정

제2항 검사 및 견본품 채취 요청

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235조 제3항 ⑥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우편물의 화주가

p.588 : 영 제243조의2 신설

법 제235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법 제235조 제1항 ①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영 제243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1항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의 통보

법 제235조 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1항 ①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항 통관보류 등 요청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 입증자료 제출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통관보류 등 여부 결정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5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항 통보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622 박스 : 영 제258조 제4항 ② 수정

②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개정 전	개정 후
②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②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p.650 박스 : 영 제263조의3 ①~④ 수정, ⑤, ⑥ 신설

법 제246조의11 제1항 관련 시행령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영 제263조의3]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 ② 외교부장관 :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③ 법무부장관 :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 ④ 검찰총장 : 다음의 정보
 - ㉠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⑤ 국방부장관 :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개정 전	개정 후
마약류	마약류등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및 처분내역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p.735 : 영 제288조 제1항 ① 수정

① 제70조 제12항(재심사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 각 호의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 제11항	제70조 제1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규정은 본 개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p.779 : 영 제12조 제6항 수정

제6항 발급신청자료로의 사용제한(서류의 중복사용 제한)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은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p.783 : 영 제13조 제1항 본문 수정

제1항 발급신청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p.768 : 영 제14조 제6항, 제7항 수정

제6항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신청의 제한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①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 ②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 ③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제7항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의 적용 시점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 제1항 제2호(원상태수출)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1년
②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삭제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라